

가축공제 이렇게 달라진다

1. 가축공제 모집사업에 민영보험사 참여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 모집 사업을 단계적으로 일반 민영보험사에게도 개방한다. 농림부는 2006년 하반기에 가축공제에 참여할 민영보험사 1개사(社)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렇게 선정된 민영보험사는 2007년 1월부터 가축공제상품을 본격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민영보험사의 가축공제 참여는 공제모집 사업자간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축산농가는 스스로 공제사업자의 서비스 정도 및 공제요율 등을 비교해 보험사를 선택·가입할 수 있다.

2. 가금류 설해 보장

가금류의 설해피해도 2007년 1월부터 보장된다. 그간 가금류는 설해 발생시 그 피해가 크고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공제사업자가 보장을 꺼렸으나, 가금 사육농가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눈피해도 주 계약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3. 보장비를 농가경제적 수준에 맞춰

피해 발생시 농가가 지급받는 공제금 수준도 2006년 8월부터는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소 : 80%, 돼지· 닭 : 95%)을 상한으로 했다. 그 이하의 보장비율을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가입할 수 있다. 공제료는 농가가 선택한 공제 보장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농가가 보장수준을 낮추면 농가가 부담하는 공제료가 낮아져 농가는 경제적 수준에 맞춰 공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4. 농가부담 공제료 100만원 이상 분납 가능

2006년 8월부터 공제료를 년 2회로 나누어 분납할 수 있다. 농가부담 공제료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 공제료 분납이 가능해져 농가는 일시납에 따른 부담을 덜게 된다.

5. 가축공제 대상 축종 확대

매년 가축공제 대상가축 범위가 확대된다.

- 현재(9개 축종) :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 매년 추가 : (07) 타조, 거위, (08) 산양, (09) 토끼, (10) 꿀벌

6. 축사 공제료 지원 계획

현재 가축에 대해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많은 축산농가들이 한·미 FTA 등 개방 확대에 대비, 가축공제사업을 축사까지 확대·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안정장치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림부는 2006년 하반기 중에 관계부처, 농가 및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축사에 대한 공제료의 보조 지원 여부 및 조건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농림부는 공제사업자가 축사 전기안전점검과 가축 무료진료 사업 등을 보다 확대해 축산농가에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참고. 가축공제 개선 대책 요약>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공제 보장 비율	• 소 : 80% • 돼지, 닭 : 95%	• 소 : 80%까지 • 돼지, 닭 : 95%까지	'06.8부터 적용
가금류설해 보장	• 가금류는 설해 미보장	• 가금류 주계약에 설해 보장을 포함	'07.1부터 적용
대상축종 확대	• 소,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07)타조, 거위 ('08)산양 ('09)토끼 ('10)꿀벌 추가	매년 추가
공제료납입 방식	• 일시납	• 년 2회 분납 (단, 공제료 200만원 이상만 해당)	'06.8부터 적용
공제사업자	• 농협	• 농협이외에 민간보험사 (1개사) 참여	'06하반기
축사특약	• 보조 : 없음 • 설해 피해 : 미보장	• 보조 : 신설 • 설해 피해 : 보장 •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농가 및 농업단체등과의 협의 진행	'06하반기 검토

<자료: 농림부-가축공제개선대책>